#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9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임이자·조승환·최수진

김미애 • 이상휘 • 유용원

김위상 · 김형동 · 정희용

김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 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 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학위전공심화과정"을 "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한다.

1의3. 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제40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학위전공심화과 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 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등)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 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과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본다.
  - ④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 중 "제50조의2제1항"을 "제50조의2"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4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8조제3항 중 "학위전공심화과정 및"을 "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및"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3(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 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인가 를 받은 경우
  - 2.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 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	5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	
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	
조에 따른 <u>다기능기술자과정</u>	<u>다기능기술자과정,</u>
<u>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u> 을 운	학위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
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	<u>기술석사과정</u>
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3. 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
	런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
	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
	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과
	<u>정</u>
2. 직업훈련과정	2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	다다기능기술자과

## 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훈련과정

### ②・③ (생략)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u>학위전공</u> 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④ (생 략)

#### <신 설>

<신 설>

⑤ (생략)

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학위전</u> 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과의 학위전공 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 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 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위전공 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 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신 설>

- 제4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등)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 런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 치·운영되는 전문기술석사과 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의 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으 로 본다.
  - ④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위전공 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신 설>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u>학위전공심화과정 및</u> 직업훈련 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u>으로 정한다.</u>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u>제50조의2</u> -
<u>.</u>

제41조의3(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4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문기술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4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3)
-학위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
<u>사과정 및</u>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 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40조의2<u>제5항</u>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생략)
- ② (생략)

<신 설>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
치인가의 취소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7항</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게40ㅈ이?(저므기수서시고저	서

- 제49조의3(전문기술석사과정 설 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

     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 7. (생 략) <u><신 설></u>

<u>2.</u>	제40조	의4제5항(	에	따른	인가
-	기준에	미달하게	됨	경우	

-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 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623	E(정년	<del>-</del>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 기술석사과정 설치인가의 취 소